

EPR 재활용 실적 관리 강화

수기 계량증명서 불인정, 부정 적발 시 자격 제한 등

환경부는 재활용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(기업)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「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일부를 개정(환경부 예규 432호, 2011. 3. 11.)하였다. 환경부로부터 EPR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 중인 한국환경공단은 EPR 체계 하에서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(09년 기준 약 510개), 일부 업체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.

개정 된 예규에 따르면

- 재활용실적 증빙서류를 사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·재활용실적 증빙자료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,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EPR에 따른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(단, 2010년까지의 재활용실적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 제출시 인정할 수 있음)하고,
- 재활용의무이행결과 조사·확인시 허위 회수·재활용실적이 적발된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활용의무이행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했다.
- 이에 따라 허위 회수·재활용실적이 적발된 비율(허위 회수·재활용실적량÷의무이행결과보고서상 회수·재활용실적량)에 따른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.
 - ▶ 1% 미만 : 주의
 - ▶ 1% 이상 ~ 5% 미만 : 경고(2회이상 경고시 1년간 자격제한)
 - ※ 경고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경고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.
 - ▶ 5% 이상 ~ 25% 미만 : 1년간 자격제한
 - ▶ 25% 이상 : 2년간 자격제한

따라서 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자들은 2011년 재활용 실적 자료작성 시부터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
- 재활용실적 증명을 위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계량증명서 제출 필수
 - ▶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 엑셀서식 별도 기재
- 관리대장 작성시 재활용방법과 보관량 기재 필수
 - ▶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요령 참고
- “재활용 방법”에 잉고트, 펠릿, 섬유코팅제, 내화철골피복재 등 해당사항 기재
- “그 밖의 사항”에 재활용한 품목의 판매처, 판매일자 기재